

재단법인 산 학 협 동 재 단

우06627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29 전화:3415-1250 전송:3415-1245

문서번호 : 산학2017 - 77호

2017.12.12.

수 신 : 서울대학교 총장

참 조 : 장학담당부서 책임자

제 목 : 산학협동재단 2018학년도 장학생 후보 추천의뢰

1. 귀 대학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본 재단에서 연구수행한『기업관점의 대학 산학협력평가』에서
귀교가 우수대학으로 평가되어, 다음과 같이 귀교에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.

다 음

1. 추천 대상 등 세부내용 : ‘붙임’ 추천요령 참조

2. 귀교에서는 추천요령을 참조하시어 적격 후보자를 선정, 2018년 1월 22일까지 본 재단으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장학생 후보 추천시 유의사항

- 국가장학금을 비롯한 국내외 타 장학금을 신청 또는 수령예정인 학생은 추천대상에서 제외
- 추후, 타 장학금 수령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중지원시스템에서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이중지원 확인시, 장학생 선발 취소 및 재단 장학금 환수 조치

※ 추천요령 및 구비서류 양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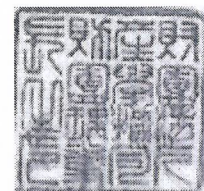
☞ 재단 홈페이지(www.sanhakfund.or.kr) 에서 다운로드 가능
문의 : 산학협력실 전상현 과장 (02-3415-1250)



붙임 : 2018학년도 산학협력 우수대학 장학생 추천요령 1부. 끝.

재단법인 산학협동재단

이사장 김 영 주



2018학년도 산학협동재단 산학협력 우수대학 장학생 추천요령

2018.

재단
법인 **산학협동재단**

2018학년도 산학협동재단 산학협력 우수대학 장학생 추천요령

본 재단이 대학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연구로 시행한 『기업
관점의 대학 산학협력 평가결과』 우수대학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장학
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.

I 추천대상

□ 본 재단에서 추천의뢰한 대학에서 이공계 또는 경상계 분야를 전공하고
있는 대학생 (2, 3, 4학년)

□ 지원자격

○ 학업성적 C학점 이상인 자 (前 학기 성적)

○ 타 장학금, 학비 감면 등을 받지 않은 자

(단, 본 재단 장학금을 포함한 등록금 범위 내에서는 타 장학금,
학비 감면 가능 ⇨ 한국장학재단의 이중지원 해당 여부 확인)

○ ‘사회적배려대상’ 가정 자녀 우선 추천

< ‘사회적배려대상’ 가정 자녀의 범위 >

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 제1호~5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자녀

II

지원내용

- ☐ 지원기간 : 1년을 원칙으로 함
- ☐ 지원인원수 : 해당 대학별 1명
- ☐ 지원금액 (1인당 연간) : (국·공립대) 400만원 / (사립대) 600만원
- ☐ 지급방법 : 학기별로 년 2회 분할 지급
 - 대학별로 추천인(대학의 총장)에게 송금

III

추천방법 및 구비서류

- ☐ 각 대학의 추천인(대학의 총장)이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본 재단에 제출

- 제출처 : (우) 06627

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29 산학협동재단 산학협력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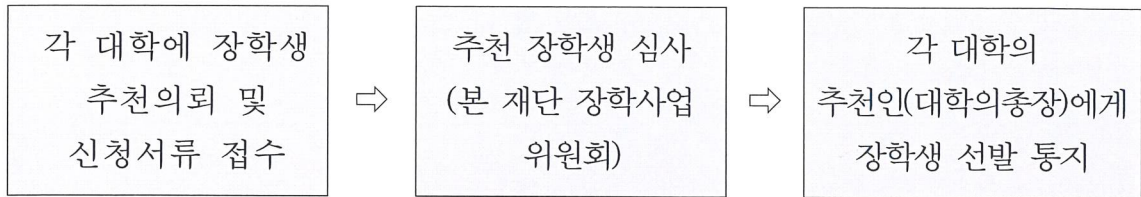
- 제출기한 : 2018년 1월 22일

- 구비서류

제출서류 목록	참 조
(1) 해당 대학교의 장학생 추천 공문 1부	
(2) 장학금 신청서 1부	(서식 I)
(3) 자기소개서 1부	(서식 II)
(4) 재학증명서, 성적증명서 각 1부	
(5) 지도교수 추천서 1부	(서식 III)
(6) 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조회 동의서 1부	(서식 IV)
(7) 신청인 서약서 1부	(서식 V)
(8) 결격사유 확인서 1부 (*장학생으로 선정 후, 학기 중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제출)	(서식 VI)
(9) 장학금 수령을 위한 은행계좌 확인서 1부	(서식 VII)

IV

장학생 선발절차



V

추천인(대학의 총장)의 의무

- ☐ 선발된 장학생이 학기 중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결격사유 확인서를 제출하고, 대체되는 신규 장학생을 추천하여야 함.
- ☐ 이 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본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.

VI

특기사항

- ☐ 장학생 지원서 및 관계 구비서류 작성에 있어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, 추천인이 제 V 항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, 해당 대학에 대해서는 본 재단 장학생 추천의뢰를 중지하게 되오니 이점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람.
- ☐ 또한 본 재단의 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, 본 재단 홈페이지 ‘장학생 커뮤니티(www.facebook.com/kshfund)’ 에 반드시 가입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.
- ☐ 기타 세부사항은 본 재단 산학협력실(☎02-3415-1250)로 문의하시기 바람.

<서식 I>

산학협력 우수대학 장학생 장학금 신청서

학적사항	학 교				※ 반드시 원본사진 첨부
	학 과(부)		학 년	* 2018년 1학기 진급학년 기재	
성 명	(한 글)		(한 자)		
주민등록번호	-		성 별	남 · 여	
현 주 소					
연 락 처	(휴대폰)	(자택)		E-mail	
사회적 배려대상자 여부 (O, X표시)	(O, X)	▣ 다문화가족 자녀 () : 부모 국적 (부 : , 모 :) ▣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자녀 () ▣ 차상위계층 자녀 () ▣ 한부모가족 자녀 ()			
본인은 산학협동재단의 2018학년도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 신청하오며, 본인이 귀 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을 시 장학금 수령에 대한 제반사항을 본인이 재학하는 대학의 총장에게 위임합니다. ※ 첨부 서류 1. 자기소개서(A4용지 1매 이내, 글자크기 11 Point) 1부. 2. 재학증명서, 성적증명서, 지도교수 추천서 각 1부. 3. 개인(신용)정보 수집 · 이용 · 제공 및 조회 동의서 1부. 4. 신청인 서약서 1부. 년 월 일 장학생후보자 : (인 또는 서명) 대학교 총 장 : (직인) 재단법인 산학협동재단 이사장 귀하					

<서식 II>

자 기 소 개 서

※ 글자 크기 및 분량 : A4용지 1매 이내, 글자크기 11 Point로 작성

1. 성장배경
2. 장학금 신청동기
3. 학업 및 진로계획
4. 기타 (하고싶은 말)

〈서식 III〉

지도교수 추천서

소속			
성명			
생년월일			
학번			
추천이유 및 특기사항			
상기 학생을 위와 같은 사유로 산학협동재단의 장학생 선발자로 인정되어 2018학년도 제 학기 장학생 후보자로 추천합니다. 년 월 일			
추천인	소속 :	대학교	학부(과)
	직위 :		
	성명 :		(인)
재단법인 산학협동재단 이사장 귀하			

<서식Ⅳ>

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및 조회 동의서

산학협동재단은 장학금 지원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·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15조, 제17조, 제24조,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'신용정보법') 제32조,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 이에 본인은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 또는 제공·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1.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		
수집·이용 목적	장학금지원	■ 장학금지원 대상자 선발 및 적격여부 판단 ■ 법령상 의무이행 등
	이중지원 확인	■ 이중지원 판단 및 확인
	※ 이중지원 : 동일학기에 두 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등록금을 초과하여 이중지원 받은 경우	
수집·이용 항목	■ 개인식별정보 : 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, 소속학교, 주소·전자우편 주소·전화번호 등 연락처 ■ 장학금지원정보 : 지원상품종류, 지급일시, 지급금액 등 장학금지원 내역 정보 ※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(신용)정보도 포함됩니다.	
보유·이용 기간	위 개인정보는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장학생 최종선발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·이용됩니다. 단, 최종 선발된 장학생의 정보는 영구보존됩니다.	
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	위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,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장학금지원 신청·선정·지급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	
수집·이용 동의 여부	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(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 ☐)	
	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고유식별정보 : [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외국인등록번호] (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 ☐)	
2. 제공·조회에 관한 사항		
제공·조회대상 기관	■ 국가, 관계행정기관(행정안전부, 국방부, 보건복지부, 기획재정부, 법무부, 외교통상부, 국토해양부,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그 산하기관) ■ 법원행정처 ■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 ■ 한국장학재단,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수탁기관 ■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(상사법인, 민사법인,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)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■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 공기업 ■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■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, 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」에 따른 기능대학, 「평생교육법」 제33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·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 ■ 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■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■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에 정하는 공직유관단체 ■ 업무위탁업체에 대한 제공 - 수집·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	
제공·조회 목적	장학금 지원	■ 장학금지원 대상자 선발 및 적격여부 판단 ■ 법령상 의무이행 등
	이중지원 확인	■ 이중지원 판단 및 확인
제공·조회할 개인정보항목	■ 개인식별정보 : 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, 소속학교, 주소·전자우편 주소·전화번호 등 연락처 ■ 장학금지원정보 : 지원상품종류, 지급일시, 지급금액 등 장학금지원 내역 정보 ※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(신용)정보도 포함됩니다.	
보유·이용 기간	위 개인정보는 제공·조회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장학생 최종선발시까지 위 제공·조회 목적을 위하여 보유·이용됩니다. 단, 최종 선발된 장학생의 정보는 영구보존됩니다.	
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	위 개인정보의 제공·조회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,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장학금지원 신청·선정·지급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	
제공·조회 동의 여부	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·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(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 ☐)	
	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고유식별정보 : [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외국인등록번호] (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 ☐)	

년 월 일

성명: 서명 또는 (인)
(주민등록번호 : -)

<서식 V>

신청인 서약서

본인은 산학협동재단의 장학금지원 신청인으로서, 산학협동재단으로부터 장학금지원을 받는 동안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학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. 또한 본인이 한 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수령하는 학자금 지원금에 대해 즉시 상환 또는 반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※ <이중지원의 범위>

구 분		종 류
중복지원해당 학자금 지원기관		■ 국가, 관계행정기관(행정안전부, 국방부, 보건복지부, 기획재정부, 법무부, 외교통상부, 국토해양부,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그 산하기관) ■ 법원행정처 ■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 ■ 한국장학재단,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수탁기관 ■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(상사법인, 민사법인,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)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■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 공기업 ■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■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, 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」에 따른 기능대학, 「평생교육법」 제33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·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 ■ 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■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」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■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에 정하는 공직유관단체
학 자 금 종 류	대출	■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- 든든학자금(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), 일반상환학자금(WEST 포함),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■ 타기관 학자금 - 공무원학자금 대출(공무원연금공단),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(국방부),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(국가보훈처),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(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), 근로자학자금 대부(한국산업인력공단, 근로복지공단) 등
	장학금	■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-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I·II 유형, 대통령과학장학금, 대통령드림장학금, 국가우수장학금(이공계 및 인문사회계), 국가연구장학금(이공계 및 인문사회계),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, 사랑드림장학금 등 ■ 정부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, 지자체, 민간장학재단, 기업, 대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- 군장학금, 국가유공자장학금, 하이서울장학금, 삼성꿈장학재단 장학금 등
	기타 학비 지원	■ 부모의 직장 등으로부터의 학비 지원 - 부모 또는 후견인의 직장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'학비 지원제도'에 의해 등록금을 지원 받는 경우
중복지원 예외사항		■ 근로장학금, 멘토링장학금, 연구(보조)원 수당, 식비,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, 교육 훈련비, 연수 체재비, 기숙사비,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※ 단,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(등록금 감면)인 경우는 불인정 ■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

년 월 일

성명: 서명 또는 (인)

<서식Ⅵ>

결격사유 확인서

2018학년도 귀 재단 장학생 중 결격사유 확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.

학 과	학년	성 명	결격 사유	비 고
				* 결격 사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하실 것

(주) 결격사유 내용

- (1) 장학생이 징계처분을 받게 된 경우
- (2) 졸업, 휴학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
- (3) 2018학년도 1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 유지되지 않은 경우
- (4) 한국장학재단의 이중방지 지원시스템 심사결과, 이중지원 해당자인 경우
- (5) 기타 본 재단 조치사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등

※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본서식에 ‘결격사유 없음’을 표기하여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_____ 년 월 일

_____ 대학교 총 장 (직인)

재단법인 산학협동재단 이사장 귀하

<서식Ⅶ>

장학금 수령을 위한 은행계좌 확인서

구 분	내 용
1. 대학명	
2. 은행명 및 계좌번호 (※ 반드시 해당 학교 통장 계좌를 기재)	
3. 예금주명	
4. 장학담당 부서명 전화번호	
5. 장학담당자 성명	

상기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.

년 월 일

_____ 대학교 총 장 (직인)

재단법인 산학협동재단 이사장 귀하